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수소도시 건설·운영 근거 마련 》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57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제220525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4
가. 총괄 검토	4
나. 목적,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8
다. 수소도시종합계획 및 수소도시건설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11
라. 인·허가등 의제 및 특례 사항 등(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19
마. 수소도시건설산업 및 기술 지원 등(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25
바. 보칙 및 벌칙(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31

I.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제220525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1. 5.

다. 회 부 일 : 2024. 11. 6.

2.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수소에너지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

위와 같은 추세에 따라 수소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조성이 핵심 방안으로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수소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운영·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소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수소도시를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소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소도시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기술을 시험시공하거나 우선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보급을 확산하고 수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4. 검토의견

가. 총괄 검토

제정안은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소 도시 건설·운영·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5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기본 구조 】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재원의 마련 등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의 책무
제5조	수소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제2장 수소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제6조	수소도시건설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사업시행자
제8조	수소도시건설 실시계획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10조	준공검사
제11조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특례
제1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1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5조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귀속
제16조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운영·관리 등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3장 수소도시건설기술 등의 지원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등 보조 또는 융자 연구·개발 등 신기술 지원 등 시범사업 추진 수소도시건설기술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등
제4장 보칙	
제23조 제24조 제25조	보고 및 검사 등 업무의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26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제2조	시행일 수소도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한 수소도시종합계획, 수소도시건설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②수소도시 건설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의제 및 특례 절차를 규정하며(안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③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 기술 지원 및 시범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3장).

수소도시는 신에너지¹⁾인 수소에너지의 생산시설, 이송시설, 활용시설 등의 수소생태계²⁾ 기반을 구축하여 주거, 교통, 산업 등 생활 전반에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도시로서,

제정안은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수소도시의 경우 도시계획, 개발, 수소생태계 기술이 융·복합되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수소도시의 효율적·체계적 조성을 위한 단일 법령의 제정에 동의하는 입장이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며 체계 상 조항 수(26개)가 많지 않아 조항을 별도 ‘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수소에너지와 관련하여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시행 중으로, 제정안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2) 수소의 생산부터 이송, 저장, 활용으로 이어지는 수소의 생애 전주기

【 제정안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비교 】

구분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토교통부 소관)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본방향	- 도시내 수소생태계 조성 - 주거, 교통, 인프라 등 도시내 수소기반 마련	-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 -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소안전 관리에 중점
계획체계	- 정부, 지자체, 민간이 모두 참여 하는 계획 수립 - 종합계획(국가), 수소도시계획(지자체), 실시계획(공공, 민간 등)으로 계획체계 구성	- 국가주도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계획수립 부재
공간범위	- 도시내 수소생태계 전반에 적용 - 지역 기반시설, 공공·민간 서비스 등과 연계	-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국한 - 창업·사업화, 기업유치, 인력양성 등 산업생태계 육성, 연료전지 설치 독려
사업목적 및 방식	- 수소가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과 융복합되어 수소경제 플랫폼 역할 - 수소도시계획 하에 도시내 수소 인프라 구축 등 추진	- 수소산업 자체에 초점 - 특정 산업입지에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R&D, 사업지원 등 추진
추진체계	- 수소도시업무 위탁기관 지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LH, 연구기관 등 업무특성에 적합한 공공기관에 위탁	- 전담기관 지정 - 산업진흥(수소융합얼라이언스), 유통(한국가스공사), 안전(한국가스안전공사)
시행일	공포 후 1년	- 공포('20년 2월) 후 1년 - 다만, 안전관리 부분은 공포 후 2년

※자료: 국토교통부

나. 목적,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소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도시”란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수소도시건설사업”이란 수소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소도시기반시설

나.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

다. 수소를 활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의 충전시설

라. 수소를 활용하는 물류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시설

마. 그 밖에 수소를 활용하여 가동하는 시설, 수소의 생산·저장·이송에 필요한 시설, 수소도시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수소도시기반시설”이란 수소도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소도시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설계·시공·운영 관련 기술

나. 가목의 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

5. “수소도시건설산업”이란 수소도시기반시설과 수소도시건설기술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산업으로서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산업,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 정 안

제3조(재원의 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자원(財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수소도시 건설과 안정적인 수소도시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수소도시 건설사업 및 수소도시건설기술 개발이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법률의 제정 목적, 주요 법률 용어에 대한 정의, 재원의 마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1조는 법률안의 제정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수소법³⁾의 경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제정안의 경우 신에너지인 수소를 활용한 “수소도시”의 건설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며,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장에서 수소도시건설기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목적에 수소도시의 건설 및 운영 뿐만 아니라 “지원”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안 제2조는 법률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 노력을,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의 책무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제정 목적에 맞게 안 제1조의 “수소도시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수소도시종합계획 및 수소도시건설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 정 안

제5조(수소도시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소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도시건설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6.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보급 등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수소경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

제 정 안

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소도시건설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수립권자”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소도시건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소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수소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부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수소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수립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이

제 정 안

나 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한 의견 중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거쳐 수립·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 보고 및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자)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소도시의 효율적 건설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수소도시건설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도시건설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 부담 방안을 포함한다)
7.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소도시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실시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협의 및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수소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수소도시건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소도시건설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및 실시계획 작성자인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안 제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안 제8조는 안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실시계획은 종합계획·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의 통일적인 계획 수립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안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4)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소도시 건설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유사입법⁵⁾을 고려하여 안 제6조의 “수소도시건설 기본계획”을 “수소도시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수소도시종합계획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소도시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총 1억 8,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⁶⁾함.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제4조)→스마트도시계획(제8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제14조)의 체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수소도시종합계획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소도시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총 1억 8,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종합계획 수립비용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국토교통부의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연구”(2012년),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수립”(2019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2024년) 등 연구용역 사업비 평균인 1억 8,200만원을 2026년 수소도시건설 종합계획 수립비용으로 가정함

[표] 수소도시건설 종합계획 관련 유사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기관	수행시기	금액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2012	194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정책학회	2018	246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89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등	2024	200
평 균				182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수소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8,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소도시건설종합계획의 수립	182	-	-	-	-	182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참고 1

수소도시 추진절차

주요절차	세부사항	수립내용
수소도시 종합계획 수립	·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주기) 5개년 · (절차) 여건 등 현황조사 → 관계기관 협의 → 수소경제위 심의 → 공고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국내외 동향 및 산업적 발전 전망 등 3.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4.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6. 시범사업 등
도시·군계획(자체계획) 수립	·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등	1. 지역특성 및 여건 분석 2.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등
수소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 관련 특례 부여 1.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2. 실시계획승인 특례 3.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등 입지특례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면적 2.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4. 시행 방법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원 조달 계획 등
수소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준공	※ 지원 제도 1. 예산 및 행정지원 2. 위탁기관 지정	1. 연구개발 사업 근거 2. 시범사업 추진 근거 3. 해외수출 지원 근거
사 후 관 리	· 통합안전운영센터 구축	1. 지원조직 구성·운영 2. 지자체별 지원 조례 마련

※자료: 국토교통부

라. 인·허가등 의제 및 특례 사항 등(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제 정 안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지정·협의·동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이 공고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8.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제 정 안

11.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1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행위 허가
1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7.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1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사용 허가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2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수소도시건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11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를 해당 법률에 따라 받았을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과 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수소도시기반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정하여진 수소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은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제 정 안

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소도시기반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이하 “수소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라 한다)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수소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에게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보 및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수소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한 인·허가등의 의제(제9조), 다른 법률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특례(제11조), 개별법에 대한 특례(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귀속 및 운영·관리 주체(제15조 및 제16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인·허가등의 의제는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시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인·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7)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에서는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의제 대상 법률의 심사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에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7)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지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를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1조의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특례 및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별 법률에 대한 특례는 수소도시 건설 활성화 및 조속한 조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특례의 대상이 되는 개별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8), 「도로법」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0)은 각 법률의 시행령에서 인·허가 대상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법을 개정하지 않고 제정안에 별도의 특례로 두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수소도시 건설과 관련된 기반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서 허가 대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9)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마. 수소도시건설산업 및 기술 지원 등(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제 정 안
제17조(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도시건설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소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수소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제 정 안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국내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기술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험시공 및 우선적용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시험시공 및 우선적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시범사업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보급을 확산하고 수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수소도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요건, 사업내용, 지원기준 등 대상지역 지정에 필요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도시 시범도시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2.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수소도시건설기술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각국의 발주처 초청설명회·상담회·전시회의 개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외 진출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소도시건설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에 관한 사업
2. 수소도시건설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3. 수소도시건설기술 관련 국외 전문인력의 유치와 활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제협력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수소도시건설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 보조 및 융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수소도시건설을 위한 연구·개발, 신기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 국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소도시 기술 발전 및 조성 확산을 위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어 보임.

한편, 수소도시건설사업의 경우 2020년 울산, 안산, 전주·완주 3개 도시를 수소시범도시로 선정하여 3년간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2023년 6개 도시¹¹⁾, 2024년 3개 도시¹²⁾를 수소도시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 부칙 제2조¹³⁾의 시범도시에 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마련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수소도시’ 사업¹⁴⁾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안 제22조의 국외 진출 지원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지원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1)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12) 양주, 부안, 광주동구

13) 의안번호 2205257,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칙 제2조(수소도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도시 시범도시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14) 수소도시지원(자율)(5642-301)

참고 2 수소도시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수소경제의 비전, 정책과제 등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을 통해 수소시범도시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지원계획 발표
- 既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도시 내에서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등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마련(19.10)

□ 수소도시 조성사업

- (수소시범도시) 주거·교통 등 수소 활용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위해 도시별 3년간(20~22) 총사업비 400억원 투지(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
 - * 공모를 통해 울산, 안산, 전주·완주 3개 도시를 수소시범도시로 지정
- (수소도시, 본사업) 시범사업은 종료(23년)하고 ‘23년부터 6개 도시^①, ‘24년부터 3개 도시^②에서 사업 실시(도시별 총사업비 300~400억원)
 - ① (23~26)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② (24~27) 양주, 부안, 광주동구
- (사업내역) 도시활동의 핵심인 주거, 산업, 문화 교통 등 분야 수소 활용을 기본요소로, 지역 특성에 따른 특화요소 반영
 - (기본요소) 주택, 건물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충전시설 등을 기반으로 수소교통체계 마련, 수소활용 전과정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통합안전운영센터 구축, 수소 배관망 구축 등
 - (특화요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특화요소로서 스마트팜 수소 활용, 지역 연구기관과 연계한 수소기술 개발, 수전해 및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그린수소생산시설 실증 등 추진
- (사업관리) 민간 전문가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설계, 시공, 운영 등 각 단계별로 안전성·효과성 점검을 위해 분기별 자문 실시
 - * 수소, 기계, 에너지 등 5개 분야 20여 명으로 구성, 분기별 자문회의 개최
- (안전관리) 통합 안전관리 메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분기별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설비 설치·운영 단계별 취약성을 분석·점검 실시

□ 수소도시 조성사업 주요 사업내용

시범도시사업	
울산	○ (수소인프라) 수소배관(10km), 태화강역 수소충전소,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 (수소활용분야) 울동공공임대 437세대 연료전지(440kW×3),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연료전지 (100kW), 수소 시내버스(12대), 수소차 세어링(10대) 등
안산	○ (수소인프라) 수소생산시설, 수소배관(10km), 수소충전소(1기),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 (수소활용분야) 공공임대(504세대)·단원병원 연료전지(440kW), 수소 시내버스(1대), 수전해 그린 수소생산 실증 등
전주 · 완주	○ (수소인프라) 수소공급기지, 수소튜브트레일러(6대), 수소충전소(3기),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 (수소활용분야) 대학기숙사(10kW×5), 군청사(10kW×3), 자연생태관(5kW×3), 수영장(10kW×4) 연료전지, 수소놀이체험관, 수소드론 실증(6대) 등
23년~ 수소도시사업	
남양주	○ (수소인프라) 수소생산시설(연 1,300톤), 수소배관 5km, 수소충전소 3개소, 통합안전운영센터 ○ (수소활용분야) 왕숙지구 공공임대 1,200세대 연료전지(400kW×3기), 공공청사(남양주시청 2청사) 연료전지(100kW×2기), 수소청소차 2대
평택	○ (수소인프라) 수소배관 13km, 수소교통복합기지 충전소 1개소, 통합안전운영센터 ○ (수소활용분야) 경제자유구역내 공공주택 995세대 및 공공건물(수소도시지원센터) 연료전지 (440kW×3기), 수소버스 50대, 수소트럭 100대
당진	○ (수소인프라) 재활용플라스틱 활용 수소생산시설(연 2.4만톤), 축산분뇨 활용 수소생산시설, 수소배관 6.2km, 통합안전운영센터 ○ (수소활용분야) 자원순환센터(100kW), 통합안전운영센터(100kW) 연료전지, 수소청소차 5대, 수소버스 5대, 수소지게차 2대
보령	○ (수소인프라) 축산분뇨 활용 그린수소 생산시설(연 5만톤)과 수소 배관 8km, 수소버스·수소트레일러충전소 각 1개, 통합안전운영센터 ○ (수소활용분야) 실버타운(440kW), 통합안전운영센터(440kW), 수소냉열 특화단지(1MW) 연료전지, 수소버스 45대
광양	○ (수소인프라) 수소배관 19km, 수소충전소 1개소, 통합 안전운영센터 건립 ○ (수소활용분야) 광양칠성 행복주택 150세대 연료전지(100kW), 수영장 연료전지(50kW×4기), 수소청소차 2대, 수소버스 6대, 수소드론 3대
포항	○ (수소인프라) 수소배관 18.4km, 수소충전소 3개소, 통합안전운영센터 ○ (수소활용분야) 공동주택 주민시설(50kW), 성능평가센터(100kW) 연료전지, 수소버스 2대, 수소전기차 2대
24년~ 수소도시사업	
양주	○ (수소인프라) 하수처리장 부지의 그레이수소 생산시설(연220톤), 수소배관 1km, 통합 안전운영센터 ○ (수소활용분야) 회천지구 공공임대 781세대 연료전지(100kW), 공공청사(환경사업소) 연료전지 (100kW), 수소버스 5대, 수소청소차 2대
부안	○ (수소인프라)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생산시설(연360톤) 구축, 수소 배관 5km, 수소저장용기 충전소, 통합안전운영센터 ○ (수소활용분야) 신재생에너지단지 기숙사 42세대(100kW), 월포마을 경로당(20kW), 청소년센터 (100kW) 연료전지, 수소버스 4대, 수소청소차 3대
광주 동구	○ (수소인프라) LNG 개질 수소생산시설(연 400톤), 수소 및 열배관 5km, 수소 충전소 1개소, 통합안전운영센터 ○ (수소활용분야) 인근 9,830세대에 공급하기 위한 연료전지(440kW×12기, 민자 포함), 수소청소차 1대, 수소버스 1대

바. 보칙 및 벌칙(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 정 안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국가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수소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부과·징수한다.

안 제23조는 수소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및
검사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안 제24조 및 제25조는 업무의 위탁 및 별
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26조는 안 제23조를
위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입
법례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581